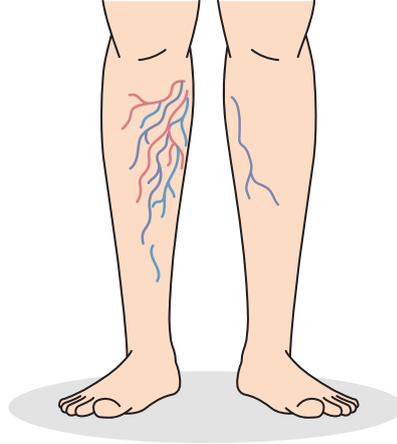


걷는 노동과 하지정맥류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선배, 이런 게 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함께 일하는 기자가 내게 물었다. 자못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 기자는 제보받은 삼성전자 화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삼성반도체 사내하청 업체에서 주야 맞교대로 물류 업무를 하는 50대 노동자 A씨는 하루 3만 보 이상을 걷는다고 했다.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운반할 때 쓰는 폼(FOUP) 여러 박스를 대차에 싣고 한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옮기는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아니,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폼을 수레로 끌고 다닌다고?

하긴 150년 전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공장의 패턴은 달라진 적이 없다.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느니,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하청노동자를 싼값에 12시간씩 사용하는 게 자본가 입장에서 이득이라면 그곳이 방직공장이든, 반도체공장이든 노동자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A씨는 “의자에 앉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고 전했다.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나는 일이 반복되더니 다리의 통증이 발등으로, 점점 퍼져나갔다고 한다. 결국 그는 2022년 11월 하지정맥류로 양쪽 다리에 수술을 받았다.

오래 걷는 일이 혈류 순환에 도움을 준다?

후배기자의 고민은 A씨의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미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였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적으로 서 있는 자세보다 걷는 동작은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 및 이완으로 하지정맥의 저류를 감소시키고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정맥류는 백화점 판매원처럼 오래 서 있는 노동자에게나 직업병이지, A씨처럼 오래 걷는 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곱씹으면 오히려 오래 걷는 일이 혈류 순환을 도와 건강에 더 좋다는 말로도 읽힌다.

후배기자는 그렇다고 멈추지 않았다. 공단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 자료를 찾고 여러 전문가에게 물었다. 마침내 그는 2020년 KTX 승무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찾아냈다. KTX 승무원은 하루 1만8,000보 이상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한 점’과 ‘열차의 진동으로 하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점’이었다. 그리고 ‘하이힐과 짧은 치마 같은 불편한 유니폼을 입어 피로 누적’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1만8,000보 이상 걷는다는 점은 산재 판정에 핵심 근거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부정적인 편이었다. 늘 노동자 입장을 대변했던 한 전문가(그는 오랫동안 활동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는 “나라도 불승인 판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장시간 걷는 일과 하지정맥류라는 질환 사이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걷는 노동자, 과연 암살일까!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젓자 후배기자는 고민에 빠졌다. 누가 봐도 A씨의 하지정맥류가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정을 했다고 기사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그에게 한국통신(현 KT) 114 전화교환원 사례를 들려줬다. 그들로 인해 1996년 처음으로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질병 범위에 포함됐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루 150~180통의 전화를 받고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한국통신 전화교환원들은 목, 팔, 어깨, 허리 등 몸 곳곳에 골병이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피병’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무시했었다. 오래 걷는 노동자에게 하지정맥류라는 현존하는 고통이 있다면 업무와 관련은 없는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힘을 실어줬다.

그 기자는 2022년 10월4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만보 걸으면 건강에 도움, 3만 보 걸으며 일한다면?”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A씨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의 하지정맥류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다.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2017년 이전 판매 및 진열 업무로 장기간 서서 일하면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던 중, 소속사업장의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해 하지근육, 인대 등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매일노동뉴스> 11월21일자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하지정맥류 산재 승인” 제목의 기사다. 🍷